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법 6절 및 63절의 하위절 8에 따른지명**

**이에 따라**, 공직자로서 선출, 지명 및 고용된 개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뉴욕주에서의 직위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에 행한 형사 또는 기타 관련 직권 남용이나 부정행위는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주정부의 직무이행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후보 지명, 선거운동 및 선거 자금 동원 등을 비롯한 선거 절차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절차는 공공의 신뢰에 부응하고 민주주의를 실행하며 선출자가 유권자에 대해 가지는 책임감과 윤리적인 공직자 선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 및 절차, 선거 절차, 선거운동 자금 조달은 엄격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하며, 주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선거위원회(Board of Elections)는 선거자금 조달, 기부금과 지출 내역 공개 등과 관련된 선거 절차를 감독하고 선거법을 이행할 권한을 가지며, 뉴욕주 예산부는 뉴욕주의 예산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합법적 의무를 이행할 임무를 가지며, 모든 뉴욕주 부서, 이사회, 관청, 기타 위원회는 주 계약, 보조금, 프로그램, 자금원을 뉴욕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관리하고 부적절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N.Y. Const. Art. IV, § 3에 따라 입법기관에게 정기적으로 "행정 상태를 보고하고, 정책을 모색하는 동안 그러한 사항을 권장"해야 하며 "그러한 법률이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 규정 및 절차의 허점을 자세히 조사하고 해결하여 추가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기부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뉴욕주 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법률 및 Const. Art. IV, § 3에 따른 권한을 포함하여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 상태를 보고하고, 정책을 모색하는 동안 그러한 사항을 권장"하며, "그러한 법률이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행정법 6절 및 63절 하위절 8에 따른 것이며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 I. 25명으로 구성된 공직자 부패 조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Public Corruption)를 지명. 여기에는 Kathleen Rice, William J. Fitzpatrick, Milton L. Williams, Jr., J. Patrick Barrett, Richard Briffault, Daniel J. Castleman, Derek P. Champagne, Eric Corngold, Kathleen B. Hogan, Nancy Hoppock, Seymour W. James, Jr., David Javdan, Robert Johnson, David R. Jones, Lance Liebman, Joanne M. Mahoney, Gerald F. Mollen, Makau W. Mutua, Benito Romano, Frank A. Sedita, III, P.

David Soares, Kristy Sprague, Betty Weinberg Ellerin, Peter L. Zimroth 및 Thomas P. Zugibe가 특별 커미셔너로 포함되며 뉴욕주의 모든 부서, 이사회, 관청, 위원회, 기타 뉴욕주의 정당에 관한 관리 및 업무를 조사하고 아래에 명시한 사항에 관한 기존 법률, 규정 및 절차의 허점을 조사할 것입니다. Robert M. Morgenthau는 이 위원회의 특별 고문을 담당합니다. Joseph A. D'Amico, Raymond W. Kelly 및 Barbara Bartoletti는 위원회의 특별 어드바이저를 담당합니다.

- II. 이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a. 주 선거위원회의 관리 및 업무를 조사하며 여기에는 (i) 위원회가 선거법에 따라 선거 절차를 관리하고 선거 운동 사례 및 자금조달 사례를 관리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 (ii) 후보, 기부자, 위원회를 포함한 외부인과 법인과 위원회의 업무를 조사하여 뉴욕주의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 (iii) 조직 구조 및 선거위원회, 법무장관, 연방 검사, 지방 검사 등의 역할, 법적 구조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직원 채용 등을 심사, (iv) 선거 자금법의 준수 및 효율성을 심사, 기존의 주 법률, 규정 및 절차로 밝혀진 허점을 개혁하기 위한 방법 권장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로비 활동 규정과 관련된 기존 법률, 규정 및 절차의 허점을 조사. 여기에는 연방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501(c)절에 따른 면세 조직, 공공 윤리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 그러한 요건의 충족 등을 포함하여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로비나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법률 준수 여부 조사가 포함되고 기존의 주 법률, 규정 및 절차에 의해 밝혀진 허점을 개혁할 방법 권장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c. 공직자 부패, 이해의 충돌, 주정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기존 법률, 규정 및 절차의 허점을 조사. 여기에는 공공의 신뢰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형사법, 기존 법률, 규정 및 절차로 밝혀진 허점을 개혁하기 위한 권장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II. Kathleen Rice, William J. Fitzpatrick 및 Milton L. Williams, Jr.는 위원회 공동회장으로 지명됩니다.
- IV. 행정법 63절 하위절 8에 따라 본인은 공공의 평화, 안전, 정의와 관련하여 본 명령에 명시된 사항을 법무장관이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부법무장관의 역할을 하는 위에 이름을 명시한 커미셔너들을 임명하며, 63절 하위절 8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공된 조사를 이행할 권한을 부법무장관에게 위임합니다.
- V. 본인은 선서를 하고 선서에 따라 목격자를 조사하며, 관련성이 있거나 실제적인 책 또는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기 위해 공직자 및 민간인의 개별 목격자 소환 및 출석 집행 권한을 포함하여 행정법 6절 및 63절 하위절 8에 따른 권한에 의해 지명된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커미셔너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1) 공동 회장은 소환장을 발부하기 전에 소환장을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며, (2) 공동 회장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조사 및 권한 무결성을 보호하면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을 포함하여 6절 및 63절 하위절 8에 따라 커미셔너에게 부여된 권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규칙을 만장 일치로 승인해야 합니다.
- VI.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기존 법률 위반 증거를 발견할 경우, 그러한 증거는 법무장관실 및 기타 해당 법률 집행기관에 즉시 보고되며 이 위원회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청장은 행정법 63절 하위절 3의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한 행동으로 발생한 기소 가능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대비심 앞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한 모든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또는 기소로 밝혀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개인 및 동일한 위반 행동이나 범죄 행위를 한 개인을 법무장관이 기소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위원회는 진행 중인 조사 및 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사 기관에 협조해야 합니다.
- VII. 뉴욕주의 에이전시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서, 이사회, 관청, 위원회는 이 명령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주 시설 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VIII. 이 위원회는 주지사와 입법 기관이 2014년 입법 세션에 법률 개혁을 고려하고 실행할 목적으로 초기 조사 결과를 명시하고, 필요한 권장을 하기 위해 본 명령에 따라 2013년 12월 1일 전에 예비 정책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 전에 또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추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보고서는 모든 공동 회장을 포함한 커미셔너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 IX. 이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공공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3년 7월 2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